

재난위험시설위원회운영규정

2022.04.29. 제정

<시설안전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고 한다)의 교육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“재난위험시설”이라 함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근거하여 교육시설물(건물, 시설 포함) 중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 및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교의 교육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본 대학교 재난위험시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캠퍼스혁신팀장, 학생·장학봉사팀장, 총무팀장, 시설안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학과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담당부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위원장은 재난위험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 및 위원장이 되고,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후대책을 수립한다.

제6조(심의사항 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재난위험시설의 지정·해제 및 안전등급 재조정 등에 관한 사항
2. 재난위험시설의 보수·보강, 철거 등에 관한 사항
3. 재난위험시설의 구조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4.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

제7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,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 임명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